

서울특별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124호
- 발 의 자 : 경만선 의원
- 발의일자 : 2021년 02월 02일
- 회부일자 : 2021년 02월 09일

2. 제안이유

- 전통무예 육성 종목 불명확, 육성 기반 구축 결여, 적극적인 정부 정책 추진 의지 미흡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전통무예 진흥 기반 구축, 전통무예 활성화 및 가치 확산 의 기반 마련을 위한 서울특별시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무예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 함.

3. 주요내용

- 전통무예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전통무예 보존 및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추진 사업을 나열함(안 제4조)
- 공적이 큰 개인 또는 단체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전통무예진흥법」 등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기 타 : 없음

5. 검토의견

가. 제정 목적

-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발전과 전통무예를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제정의 필요성

- 전통무예는 성적 지상주의에 따른 과잉 경쟁 등 기존 스포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치유적 성격의 스포츠로 전통문화와 맥을 같이하여 예의범절과 정서함양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 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정책없이 자생적으로 발전해왔으며 전통무예 관련 정책 여건이 취약했으나 「전통무예진흥법」 과 “전통무예 진흥기본계획”(’19.8.)을 근거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추어

서울시차원에서 전통무예의 가치를 보존·확산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사무의 경우, 주민복지 증진 또는 지방 체육·문화의 진흥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자치사무이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각종 사업을 별도의 조례안으로 제정할 경우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비능률성을 초래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다. 주요 조문별 검토

- **안 제2조(정의)**는 해당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으로 상위법령인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안 제2조제1호에서 “전통무예”를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2조제2호에서 “전통무예단체”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음.

<관련법령>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포함한다)”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기법·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2. “전통무예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안 제2조제2호 “전통무예단체”에서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로 정의하고 있으나 일부 중복된 용어를 삭제하여 매끄럽게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생략) 1. (생략)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u>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u> 를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u>설립되어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u> ----- -----

- **안 제4조(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사업)**에서 시장이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추진할 사업을 나열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실시 및 관련 기관·단체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현재 서울시는 전통무예와 관련한 사업으로 전통무예를 무형문화재로 지정, 보존·지원하는 사업(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전통무예를 관광콘텐츠화하여 정기공연을 운영하는 사업(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이 주된 것으로 보이며, 체육부서에서는 ‘국궁 발전 종합계획 수립 학술 용역’을 시행하는 정도로 추진되고 있음. 즉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주무부서 없이 각 과의 특성에 따라 사업이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

- **안 제5조(표창)**에서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게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종합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발전과 전통무예를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현재 서울시는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주무부서 없이 사업이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어 전반적인 업무 조율에 한계가 있어 동 조례안 제정이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한편 전통무예 진흥에 관하여 타광역 지자체의 경우 경기, 부산, 울산, 전남, 충남, 충북에서 별도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담당 조사관	연락처
박지혜	02-2180-8117

□ 발의개요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2124)
- 발 의 자 : 경만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강서3)
※ (찬성자) 김춘례, 김태호, 노승재, 안광석, 오한아, 유용, 임만균, 최기찬, 최영주 의원(9명)
- 발의일자 : 2021.2.2(화)
- 제안이유 : 전통무예 진흥 및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주요내용

- 전통무예 관련 용어 정의(안 제2조)
 - “전통무예”, “전통무예단체” 용어 정의
-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전통무예활동 장려·육성과 이에 필요한 물적·인적 기반 조성
-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규정, 관련단체·기관 경비의 지원(안 제4조)
 - 전통무예 홍보·교육 및 지도자 양성 지원,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교류 활동
 - 전통무예를 활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
 - 전통무예 관련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 등
※ 사업비 지원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따름
- 공로 개인·단체 등에 대한 표창(안 제5조)
 - 표창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따름

□ 부서 검토의견 : 『원안가결』

- 조례안은 「전통무예진흥법(2009.3.29.시행)」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전통무예 진흥 및 전통무예 기반조성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 2

전통무예 관련 현황

○ 무형문화재 지정 전통무예 현황

- 서울시의 경우(2020. 1. 1. 기준, 역사문화재과 내부자료 참고)

지정 번호	종목명칭	구분	보유자	명예보유자	보유단체	전수조교
7	장안편사놀이	예능(단체)			장안편사놀이보존회 ※보유자 있는 단체종목	
51	전통군영무예	예능			※보유자 보유단체 없는 종목	

※ ‘결련택견’은 이의신청 절차 진행 중

- 정부(문화재청)의 경우(2020.12.30.기준)

지정 번호	지정명칭(지정일)	구분	전승자	인정일	지역
제76호	택견(1983.6.1.)	보유단체	(사)국가무형문화재 택견보존회	2013.7.17.	충북
제131호	씨름 (2017.1.4.)	종목 지정	-	-	-
제142호	활쏘기 (2020.7.30.)	종목 지정	-	-	-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 따르면, 전통무예라는 범주로 분류하고 있지 않고, ‘전통놀이·무예’라는 범주 아래 관리하고 있으면 위 분류는 참고사항이라 함

○ 전통무예 관련 서울시 법인·단체 현황(2020. 12. 31. 기준)

- 전통무예 관련 비영리법인 현황(총 14개 법인, 서울시 비영리법인 중 전통무예 관련 검색결과)

허가 년도	허가 번호	허가일자	법인명	주관부서	주된사업
2020	237	2020-12-02	사단법인 국무원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무술단체간 상호친목, 권리옹호, 복지증진 및 각 무술단체 발전을 위한 국제무술 진흥 사업 2. 국제무술단체간 상호정보교류 및 자료수집 3. 국내외 전통무예 문헌조사 및 자료발굴 등 보존사업 4. 국제 국내 각종 무술경기, 경연, 시연, 연수교육 심사 등 행사 개최 주관 5. 국민체력증진 및 건강 위한 국제무술발전 프로그램 연구개발 6. 무술종목, 단체에 대한 의식 계몽 및 홍보 7. 국무원 발전 위한 소식지 및 간행물 발행 8. 국제 무술단체 발전을 위한 세미나 9. 무술종목 및 무술단체의 각종 증서발급 및 자격증 발급
2020	146	2020-07-29	사단법인 B.M.S 무의단공 협회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무예단체간의 상호친목, 권리옹호, 복리증진 및 무예 단체 발전을 위한 각종사업 2. 심신수련단체간의 상호 정보교류 및 자료수집 3. 국내외 전통무예의 문헌조사 및 자료발굴 등 보존사업 4. 각종 무예경기 경연 시연 연수교육 심사 등의 행사에 관한 개최 5. 국민건강 및 인류의 건강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 연구개발 6. 무예단체에 대한 국민의식 계몽 및 홍보 7. 협회 발전을 위한 소식지 발행 8. 국내외 무예단체 정보교류 및 발전을 위한 각종 세미나
2019	305	2019-12-30	사단법인 기천협회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회 전통무예인 기천의 수련과정의 체계화 및 고품화 연구, 보급 2. 본회 전통 무학, 문화 및 예술로 승화를 위한 연구 보급 3. 본회 발전방향과 기천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통계 4. 본회의 출판, 공연 문화콘텐츠 사업 추진 홍보 및 보급 5. 본회 산중수련원 설립 추진 및 운영으로 전통무학 계승 근거지 확보
2019	261	2019-10-24	사단법인 한국무술 총연합회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무예단체간의 상호친목, 권리옹호, 복리증진 및 무예 단체 발전을 위한 각종사업 2. 무예단체간의 상호정보교류 및 자료수집 3. 국내외 전통무예의 문헌조사 및 자료발굴 등 보존사업 4. 각종 무예경기 경연, 시연, 연수교육, 심사 등의 행사에 관한 개최 및 주관 5. 국민건강 및 인류의 건강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 연구개발 6. 무예단체에 대한 국민의식 계몽 및 홍보 7. 소식지 발행 8. 국내외 무예단체 정보교류 및 발전을 위한 세미나
2019	207	2019-08-19	사단법인 전통군영 무예보존회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무예도보통지』에 수록된 무예에 대한 학술연구 및 표준화 2. 전통군영무예의 정기발표회 및 전국적 보급 3. 전통군영무예 해외 시범 및 보급 4. 전통군영무예 관련 문화사업 및 남북 교류 사업을

					<p>통한 민족동질성 향상</p> <p>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p>
2017	94	2013-07-10	사단법인 대한신무합 기도협회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p>조상들의 정신적, 문화적 유산인 전통 호국무예 합기도를 통해 건강한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함</p>
2017	67	2017-03-09	사단법인 위대태권 회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p>1. 위대태권의 보존, 전승 및 보급 2. 전통 무예 태권의 연구 및 발전 3. 태권의 경기 방식 복원과 애기태권, 결련태의 복원 4. 품의 심사 및 공인 5. 국내외 위대태권 대회의 개최</p>
2014	78	2014-05-08	대한전통 무예진흥 회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p>1. 전통무예단체간의 친목과 발전을 위한 사업 계획 수립 2.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업 3. 전통무예단체의 육성·지원 방향에 관한 사업 4.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 검정 및 연수교육에 관한 사업 5. 전국 전통무예 대회 개최 및 각종 문화행사 공연 6. 종목별 보급과 활성화를 위한 문헌조사, 연구 세미나 및 책자 발간 7. 종목별 무예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전통무예 발굴 복원사업 8.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수익사업 9. 민족정기 계승을 위한 계몽운동 및 국내 외 자원봉사 활동 10. 전통무예의 전 국민 무예 체육화 사업 11. 지역 본회 산하 지회의 관리 및 지원 12. 그 밖에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사업</p>
2012	3	2012-03-27	사단법인 진검승부 회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p>1. 신체단련 및 발달 교육 2. 진검베기 대회 및 심사, 개최 3. 진검베기 기술의 체계화 4. 진검베기 기술의 국내외 보급 및 홍보 5. 무예정신 계승 및 활성화 6. 단도, 표창, 투검 대회 및 심사, 연구 7. 전통무예의 연구 및 보급 창시무예연구 및 보급 논문 및 출판 8. 전통무예 관련 국내외 사업축제경연 등의 개최와 참가 9. 국내외 무예단체와의 결연 및 교류 10. 기타 각 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p>
2012	2	2012-04-05	재단법인 한국에도 문화장학 체육재단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p>1. 무도 우수선수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2. 원로 무도 공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3. 전국 우수무도 도장을 지원 육성한다. 4. (사)대한검도회를 비롯 각 검도 경기단체를 지원한다. 5. 전통무예 표준화사업을 지원한다. 6. 유단자들로 국민을 위한 경호 및 경비업무 봉사를 지원한다. 7. 전통무예 박물관건립 및 운영을 지원한다. 8. 기타 이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p>
2002	4	2002-06-20	택견원형 보존협회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p>국가로부터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의 원형을 계승보존발전보급시키고 전수관장·지도자의 체계적인 교육과 인격 도야를 위함과 동시에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택견 전수자로서의 자긍심을 함양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융성과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국민 체위 향상을 위하고 국민 생활 무예로서 우리 민족의 얼을 되찾는데 크게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함</p>

1900	2480		(사)한국전통 무예무사협회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전통문화와 무예를 복원시켜 국민에게 널리 보급
1900	2418		(사)한국전 통무예공 연예술단 백의선인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한국전통무예 공연 및 관련 행사 지원, 한국 전통무예 의 공연화 작업, 각종 전통무예 관련 고증 및 재현, 각종 전통무예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전통무예에 관 한 자료수집 및 통계작성 등
1900	2176		(사)대한전 통무학회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고구려, 중국 전통무예 보급 및 재현

- 전통무예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현황(총 4개 단체,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중 전통무예 관련 검색결과)

등록 번호	대장 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주된사업
2319	2019-03-22	한국무예 위원회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TAFISA, ASFAA의 각종 주최 행사에 대표단구성 및 파견 2. 생활체육 및 한국전통 무예지도자 양성 및 교육내용의 프로그램개발 보급 3. 생활체육 무예시범단 운영 및 국제교류 협력 4. 생활체육 및 한국무예진흥원 설치 운영 및 건립 5. 무예학회 세미나 및 무예학회지 발행 6. 호신술 강좌 및 사회, 학교폭력예방 세미나 개최 등
2291	2019-01-14	서울무예 총연합회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전통무예의 문헌조사 및 자료 발굴 등 보존사업 2. 국내외 각종 무예경기 무예시연 심판 심사 연수교육 등 행사의 개최 및 주관 3. 국민건강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노인, 청소년, 장애인 대상) 연구개발 4. 무예단체에 대한 국민의식 계몽 및 홍보
2153	2017-06-08	대한무예 태권도연맹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계무예체육 국제교류 협력 2. 폭력예방활동 설치운영 및 호신술 강좌 3. 세계무예체육학문의 연구, 분석 및 신문, 책자발간 4. 지도자, 시범단 해외파견 및 무예원 운영 5. 국내외 대회행사 개최 및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금 지급 6. 세계무예체육체험장 운영 및 행사용치 7. 세계무예체육 교육 및 승단 심사 각종 자격증 부여 8. 세계무예 경기종목 및 생활체육종목 개발 육성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청소년과 장애학생을 위한 스포츠 나눔 교육봉사활동을 통한 바른 인성 함양
1183	2010-06-24	전통무예 십팔기 보존회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십팔기의 보존과 계승을 위한 제반활동 2. 한국의 전통무예 십팔기를 알리기 위한 공연활동 및 교육 3. 전통무예 학술연구 및 교육교재 개발 4. 전통무예 십팔기와 무예도보통지의 역사 및 가치 연구